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51986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5. 12. 22.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김은희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5.03.26. (강제경매개 시결정)		배당요구종기	2025. 6. 11.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주택도시 보증공사 (임차인 전준형)	주택 전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거 임차권자	2022.05.04.~	160,000,000		2022.05.12.	2022.04.08.	
	401호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2.05.04.~ 2024.05.04.	160,000,000		2022.05.12.	2022.04.08.	2025.03.21.
<b>&lt;비고&gt;</b>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전준형): ①경매신청채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 제9호의 양수인임 ②임차인`전준형`은 주택임차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05.09.임 ③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서 접수일이고, 권리신고 내용 중 `임대차기간,보증금,전입신고일자`은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전세계약서`등에 근거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자(을구5번) 있음(임대차보증금:160,000,000원/ 전입일자:2022.05.12./ 확정일자:2022.04.08.)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51986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5-19

신정홈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1길 4-24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12.15㎡

2층 151.36㎡

3층 151.36㎡

4층 121.56㎡

5층 100.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4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8.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5-19

대 273.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73.3분의 28.0301

감정평가액

160,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1.22

160,000,000

16,000,000

2회

2026.03.05

112,000,000

11,200,000

3회

2026.04.16

78,400,000

7,840,000

4회

2026.05.28

54,880,000

5,488,000